아래 사항은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 제3항, 보험업법시행령 제 57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5조에 의한 공시사항입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보험업법 제111조 제3항에 관련된 사항

1. 대주주명		DB캐피탈(주)
2. 신용공여내용	신용공여일	2020년 3월 27일
	신용공여종류	신용대출
	신용공여금액(원)	24,000,000,000
	신용공여총잔액(원)	24,000,000,000
	만기일	2022년 3월 27일
	신용공여금리(%)	기타사항 참고
3. 자금용도		신용대출 Refinancing
4. 이사회결의일		2020년 3월 13일
5. 기타		- 본 건은 자회사인 DB캐피탈(주)에 대한 240억 원의 신용대출 Refinancing에 관한 사항임 - 상기 2항의 신용공여일은 대출약정 체결일임 - 상기 2항의 신용공여금액은 대출금액임 [주요내용] - Refinancing 대상: 기 보유한 잔액 240억원의 신용대출 - 적용금리: 공정위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근거로 Refinancing 기준일 직전 시점에 '개별정상금리' 산정방법으로 산출, 적용 예정 - 대출기간: 2년